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3707-8975-8 전송 (02)3707-8889  
 처리부서 : 도시경관과(중구 서소문동 서소문길 13층) 담당 : 김정수

문서번호 도경 13570- 443  
 시행일자 1997. 6. 17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지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법무담당관 심사필
국장	전결	
과장	/	
계장	/	
기안	김정수	
		합즈

제목 서울특별시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

1. 육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1997.2.6 대통령령 제15271호로 개정됨에 따라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시경관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서울특별시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개정 절차(입법예고, 의견조회 등)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육외광고물 관리에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첨부 : 1. 서울특별시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안 1부  
 3. 시·도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준칙안(내무부) 1부.끝.

# 서울특별시장

(제 2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서울특별시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1.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육외광고물 관리에 많은 협조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 육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1997.2.6 대통령령 제15271호로 개정됨에 따라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시경관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서울특별시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의견을 ~~문~~조회하오니 '97. 7. 14까지 도시경관과장 참조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일반광고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일법예고 공고안 1부. 끝.

##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 내무부장관(사회진흥과장), 서구 01-25(광고물관리부서장),

한국광고사업협회서울시지부장, 육군제1596부대장(작전처 화력과장),

소방본부장, 홍보담당관, 세무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

(제 3 안 )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서울특별시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일법예고 공고 시트게지 의뢰

1. 도시경관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 보강을 위하여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  
하는 서울특별시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일법예고 공고를 서울특별시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에 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안) 1부. 끝.



## 도시경관과장

#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1997-~~160~~호

제1997-160호	1997. 6. 11	제1997호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관리위원회	사무국
안	안	안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7년 6월 일

서울특별시장

### 1. 개정취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97.2.6)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하고, 도시경관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에 대하여 그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허가를 받은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 연장허가를 받도록 함.

나. 옥상간판·전자식 전광판 등 대형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전 영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다. 영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변경, 제작자명 및 관리자가의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등은 건물의 벽면에 업체명 또는 도로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등과 현수막, 벽보 등 표기할 수 없는 광고물등으로 함.   
 (다. 영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변경, 제작자명 및 관리자가의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등은 건물의 벽면에 업체명 또는 도로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등과 현수막, 벽보 등 표기할 수 없는 광고물등으로 함.   
 *표기할 수 없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라. 항공기의 안전행행을 위하여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이상이면서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토록 함

마.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론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1) 광고물 상단의 높이를 지표로부터 60미터이상으로 하며, 건물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각 400미터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우도록 하여 항공기의 안전항행 및 시민의 안전을 보장토록 함
- (2)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애드벌룬 전체높이의 1.5배이상으로 하고, 애드벌룬간 수평거리를 도심반경(도로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로부터의 직선거리를 말함) 5킬로미터까지는 2킬로미터이상, 도심반경 5킬로미터초과 10킬로미터까지는 1.5킬로미터이상, 도심반경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킬로미터이상으로 함
- (3) 관할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수평거리이내의 지역에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미리 협의하고, 허가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 바. 영 제26조제3항 본문 단서규정의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사. 내은 또는 전광류의 빛의 밝기규정에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추가 규정하고, 영 제31조제4항제3호 규정의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에 공공목적 위한 내용의 표출비율은 광고표출 시간별로 40퍼센트이상으로 함
- 아. 영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전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광고물등의 설명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자.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 규정중 광고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정하고, 연립간판의 경우는 그 수수료의 1/2을 경감토록 함
- 차. 시장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 징수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수수료 내역 별첨)
- 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에 관한 중업원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하한금액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함

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에 관한 종업원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하한금액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6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경관과장, 전화번호 : 3707-96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별표 3]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제16조 관련)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
1. 벽면간판	가. 일반 벽면간판 (가로형·세로형간판)	개	5제곱미터이하	3,000
			5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나. 건물 측·후면 4층이상(영 제15조제4호)	개	20제곱미터이하	40,000
			2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2. 돌출간판		개	3.5제곱미터 이하	20,000
		개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30,000
		1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이·미용업소 표지등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개	1제곱미터이하의 1개에 한함	5,000
3. 공연간판		개		10,000
4. 옥상간판		개	20제곱미터이하	100,000
		개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200,000
			4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5. 지주이용간판		개	10제곱미터이하	20,000
			10제곱미터초과 30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3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6. 에드빌튼		개		20,000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지상에 표시하는 것 다. 옥상에 표시하는 것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옥상간판에 준함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
7.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1제곱미터이하		2,000
		1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나. 전주·가로등주	개	20개이하		15,000
		20개초과 20개당 가산		10,000
8.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	5제곱미터이하		15,000
	개	5제곱미터초과		20,000
9.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개			500,000
나. 차량 양측면	대			2,000
다. 택시표시등	대			2,000
10. 선전탑	개			20,000
11. 아취광고물	개			20,000
12.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을 이용 하는 현수막 (영 제21조제1항)	개	벽면간판에 준함		
나. 지주 또는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현수막 (영 제21조제2항)	개			10,000
13. 벽보	매	20매이하		5,000
		20매초과 50매이하		10,000
		50매초과 50매당 가산		10,000
14. 전단	매	1,000매당		5,000
15. 주소·성명등 변경신고 (영 제9조제2항)	건			5,000

※ 수수료의 징수 방법

- (1) 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물의 면적은 포함 한다.
- (2)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한다.
- (3)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액의 2분의1을, 기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 (4)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의 전액을 징수한다.
- (5) 가로형·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1을 경감하며, 연립간판 전체 표시면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광고내용변경 수수료액을 징수한다.
-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선전탑 등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점용료 등은 관계법령 또는 시·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4]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16조 관련)

(단위 : 원)

광 고 물 등 의 종 류	적 용 기 준	수 수 료
1. 옥상간판과 건물 측·후면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 가로형간판,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연면적 20제곱미터미만	22,000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45,000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3.5제곱미터미만	15,000
	3.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22,000
	10제곱미터이상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입체형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	5제곱미터미만	15,000
	5제곱미터이상 15제곱미터미만	22,000
	15제곱미터이상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10제곱미터미만	15,000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22,000
	30제곱미터이상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의 면적은 1/2을 적용하며(단순 지주는 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에는 표시면적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한다.